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
----------	-----

제출연월일 : 2012.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침이 사후관리 개념에서 사전 발생억제 우선 정책으로 전환되어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안 제4조)

- 군수는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 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 제5조)

-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 후 음식물류 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 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라. 생활폐기물 처리 (안 제6조)

-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마.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안 제9조)

-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배출 시 스티커 구입으로 하며,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종량제봉투 가격 결정 등 (안 제10조)

- 봉투종류는 일반용, 음식물전용, 재사용, 유해성전용 PP포대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이 봉투용량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한다.

사. 종량제봉투 종류·재질 등 (안 제11조)

- 일반용봉투는 흰색 또는 분홍색, 음식물류 폐기물봉투는 청록색, 재사용봉투는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파란색으로 한다
-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한다.

아.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안 제16조)

-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표 4」와 같이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자. 수수료 감면 등 (안 제17조)

-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보장시설 수용자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종합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차. 신고 포상금 지급 (안 제19조)

- 군수는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카. 업무의 위탁 (안 제20조)

-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타. 과태료 부과 (안 제21조)

-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 8에 따라 부과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협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12. 4. 9 ~ 4. 29(21일간)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답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6. "재활용품"이란 군수가 정하는 품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2.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환경을 해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류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 또는 지정된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으로 신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발급받아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4.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는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환불받으려는 사람은 스티커를 구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별지 제4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을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장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

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용 용기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폐기물(토목·건축·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해야 하고,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출 시 징수한다.
2.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징수한다.
 - 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봉투 가격 결정 등) ① 제9조제1항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 : 흰색 또는 분홍색
2.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 청록색
3. 재사용봉투 : 보라색
4. 공공용봉투 : 파란색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3. 봉투관리 및 판매준수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은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3조(계약 등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2. 군수가 정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3.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14조(종량제봉투 공급 등) ①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납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종량제봉투는 배출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봉투제작 계약을

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수량·크기 등을 확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가 불법 제작되어 유출·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검수된 종량제봉투를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7조(수수료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보장시설 수용자 제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종합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수수료 징수의 준용)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9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개인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민간단체 범위는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의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 8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 1)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관장소를 지정해야 함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 2)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3) 군수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해야 함
 -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6호 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7호, 8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

여야 함

-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관리
-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관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한다.
-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해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해서는 아니됨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 4)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군에 보고
-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함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봉투종류	봉투용량	공급가격	판매가격	비고
일반용	10리터	201	220	
	20리터	385	420	
	50리터	935	1,020	
	75리터	1,403	1,530	
	100리터	1,871	2,040	
음식물전용	3리터	55	60	
	5리터	100	110	
	10리터	201	220	
	20리터	385	420	
재사용	10리터	201	220	
	20리터	385	420	
유해성전용 PP포대	20리터	1,001	1,100	

※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방법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목표치) + 봉투 제작비 + 판매이익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제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가전제품류(17품목)		
냉장고	500ℓ이상	8,500
	300ℓ이상	7,000
	300ℓ미만	6,500
세탁기	모든규격	5,500
탈수기	모든규격	3,500
청소기	모든규격	2,000
가습기	모든규격	1,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팩스기기	모든규격	2,000
에어컨	264m ² 이상	8,000
	66m ² 이상	7,000
	66m ² 미만	5,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8,000
	12인치이상	5,000
오디오	대형	5,000
	소형	3,000
컴퓨터	일반형	3,000
	노트북	1,500
스피커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3,000
온풍기	264m ² 이상	8,000
	66m ² 이상	7,000
	66m ² 미만	5,000
난로	33m ² 이상	4,000
	33m ² 미만	3,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5,500
	높이1m미만	3,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2,000
선풍기	모든규격	1,500
가구류(16품목)		
장롱	120cm 1쪽	15,000
	90cm 1쪽	10,000
응접세트	장의자	7,000
	의자	5,000
식탁	6인용 이상	7,000
	6인용 미만	6,000
밥상	4인용 식탁	2,000
	4인용 미만	1,500
싱크대	길이 2m이상	7,000
	길이 2m미만	5,000
책상	양수, 대형	7,000
	편수, 소형	6,0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침대목재	2인용	5,000
	1인용	3,000
매트리스	2인용	5,000
	1인용	3,000
의자	모든규격	2,000
장식장	5단 이상	8,000
	5단 이하	6,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문갑	모든규격	5,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4단 이상	5,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신발장	모든규격	4,000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생활용품류(9개 품목)		
필통	모든규격	3,000
벽시계	대형	2,000
	중소형	1,000
인형류	모든규격	1,000
장난감류	모든규격	1,000
가방	모든규격	1,000
액자	길이 1m이상	1,500
	길이 1m미만	1,000
진열대	길이 1m이상	5,000
	길이 1m미만	3,000
캐비닛	모든규격	6,000
피아노	업라이트	11,000
	그랜드	15,000
기타(14개 품목)		
창문	목재(쪽당)	
	대형(높이1.5m이상)	3,000
	중형(높이1.0m이상)	2,5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새시(쪽당)	
	대형(높이1.5m이상)	4,000
	중형(높이1.0m이상)	3,0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일반문	목재(쪽당)	3,000
	새시(쪽당)	4,000
수족관	대형	12,000
	중형	8,000
	소형	4,000
거울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3,000
자전거	성인용(2발)	3,000
	아동용(2발)	2,000
	아동용(3발)	2,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깨진유리	kg당 (마대에 담아 배출)	500
항아리	대형	2,000
	소형	1,5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변기통	모든규격	3,500
장판	kg당	500
카펫	kg당	500
목재	kg당	500
플라스틱류	kg당	5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4]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6조 관련)

구 분	배출 기준	반입수수료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톤당	23,800원	

※ 재활용이 되지않는 스티로폴 등 비중이 낮고(0.1이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폐기물은 기본료 5,000원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단 1m³ 이상에 한하여 적용함)

[별지 제1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신고번호	제 - 호		
신고자			
주소	평창군 읍·면	번지	전화번호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종 류	규 격	수 량	수수료(원)
<p>「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p> <p>○ ○ 읍·면장 귀하</p>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 - 호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폐기물 부착용)

이 대형폐기물은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사전에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물품입니다.

- 배출자 성명 :
- 배출 신고일 :
- 대형폐기물 신고내역

품 명	규 격	수 수 표

○ ○ 읍 · 면 장

[별지 제4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

배출신고일자	취소(변경)사유	처리기간 20일
--------	----------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취소(변경) 내역	폐기물명	규격	수량	기 납부수수료	환불산정액	비고
				원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환불내역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 항목

-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 차. ⑭, ⑮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 카. ⑯, ⑰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불법투기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포상금 지급계좌			

○ 투기자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그 밖의 사항			

○ 투기행위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자	
위반내용	
증거물여부	
그 밖의 사항	

※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출 시 징수한다.
2.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와 제3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징수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개인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민간단체 범위는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비용추계 산출이 어려우며 향후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환경과 환경과장 최찬웅
연락처	(033) 330 -2340

관계법령 발취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

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7.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삭제 <2010.7.23>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개정 2012.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3	3	3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흘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경우	400	600	1,000
(4) 의료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라.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마.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사.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아.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자.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차.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카.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파.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하.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너.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더.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			
1)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2)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나)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500	700	1,000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700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다)	500	700	1,000	
5)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가)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머.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버.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서.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법 제68조	50	70	100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3항제9호			
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1호	100	100	100
노.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도.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로.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모.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보.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소.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오.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4>